

민법상 물건의 범위,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

보고서 | 2026. 07

제 1 장. 조사 개요	3
1. 조사 배경	3
2. 조사 설계	3
1) 표본 설계	3
2) 조사 방법	3
3) 모집단 총화	4
4) 표본 할당	5
3. 실사 설계 및 자료처리	6
1) 실사 설계	6
2) 자료 처리	6
3) 가중치 보정	7
4. 조사 항목	8
5. 응답자 특성	9
6.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10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13
1. 동물 양육 여부	13
2.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	15
3.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17
4.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
4-1.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	21
5.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인식	23
6. 동물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	25
7. 반려동물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27
7-1.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29
7-2.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1
7-3.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33
8.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인식	35
9. 치료비가 동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범위 인식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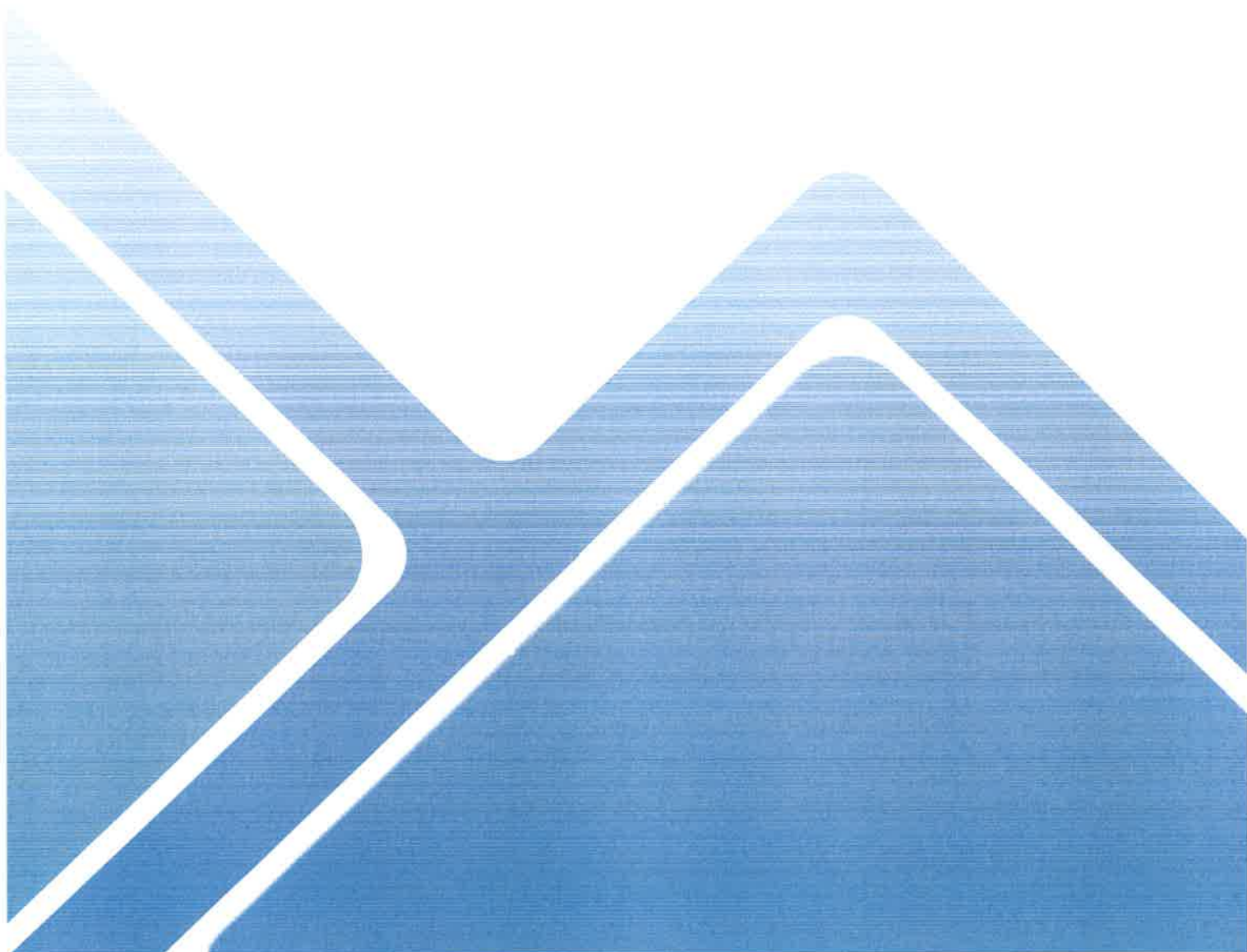
제 3 장.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41
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41
1)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임	41
2)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41
3) 구별의 적용 범위 및 구체적 권리 제한에 대한 신중한 태도	41
4) 손해배상 범위 확대에 대한 우호적 인식	41
5) 동물 양육 경험·성별·연령이 주요 변별 요인	42
2. 조사 결과 시사점	42
1) 법/제도와 국민 인식 간 정보 격차	42
2) 구별 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42
3) 적용 범위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43
4) 구체적 권리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	43
5) 손해배상 제도 개선의 여론적 기반	43
3. 종합	44

부록. 질문지

제1장

조사 개요

민법상 물건의 범위,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현행 민법상 동물은 별도의 규정 없이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양도·압류 등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법체계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여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해 왔음
- 이와 같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도 변화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법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는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1) 표본 설계

〈표 1-1〉 표본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모집단	2026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표본크기	1,000명 (유효표본 기준)
표본추출	시도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 표본할당의 준거기준은 '2026년 5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외국인 제외)' 활용
표본추출틀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의 Dual Frame 전화조사 이용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2) 조사 방법

〈표 1-2〉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유·무선 RDD 전화면접조사(유선 9.6%, 무선 90.4%)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26년 6월 22일 ~ 6월 25일 (총 4일간 진행)
조사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모집단 총화

● 지역(전국 17개 시도), 성, 연령을 기본 층화변수로 활용함

〈표 1-3〉 모집단 총화

행정구역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국	44,530,734	3,381,315	3,503,396	3,826,473	4,338,645	3,941,255	3,064,019	3,146,887	3,190,370	3,685,112	4,270,727	4,039,643	4,142,892
서울특별시	8,283,375	656,678	733,823	670,066	718,664	625,782	551,495	739,229	735,508	685,789	744,091	692,235	730,015
부산광역시	2,856,106	196,033	200,806	231,033	257,517	259,188	232,969	189,116	187,514	224,855	267,028	292,349	317,698
대구광역시	2,049,169	152,517	152,159	166,052	199,362	182,553	143,531	139,661	133,568	166,001	209,585	199,454	204,726
인천광역시	2,651,866	199,646	226,202	243,647	257,350	235,712	156,151	188,054	206,748	228,652	257,215	243,095	209,394
광주광역시	1,189,449	102,465	90,548	104,861	118,850	94,129	72,144	93,949	83,211	105,158	120,869	102,220	101,045
대전광역시	1,251,020	111,850	104,596	103,909	120,624	101,631	77,160	104,139	91,718	102,921	121,415	107,608	103,449
울산광역시	934,049	72,913	76,096	86,965	97,982	91,959	55,767	54,971	60,812	80,106	97,953	89,731	68,794
세종특별자치시	308,834	23,445	28,281	36,976	31,129	19,766	13,431	22,179	28,779	38,690	28,904	20,053	17,201
경기도	11,823,750	936,209	1,015,174	1,107,105	1,186,126	995,255	677,998	861,862	919,550	1,060,246	1,173,806	998,728	891,691
강원도	1,329,704	95,485	85,730	98,018	131,512	141,333	115,056	76,482	73,414	94,119	123,898	140,411	154,246
충청북도	1,395,189	106,909	107,746	114,802	138,853	138,356	103,986	88,128	86,709	104,762	131,580	133,900	139,458
충청남도	1,853,347	136,872	138,608	166,115	187,695	175,812	146,721	113,140	113,613	144,808	166,271	166,680	197,012
전라북도	1,509,269	108,946	91,192	114,019	153,784	148,236	133,045	93,116	81,679	109,219	143,049	145,834	187,150
전라남도	1,557,629	102,565	90,919	118,504	161,394	167,316	145,224	83,290	79,798	105,967	139,078	154,412	209,162
경상북도	2,201,520	146,045	138,884	171,575	222,735	235,967	196,338	111,996	112,307	156,480	207,086	228,236	273,871
경상남도	2,773,071	191,544	183,515	241,730	293,903	277,897	205,686	151,462	157,715	226,870	281,718	275,178	285,853
제주도	563,387	41,193	39,117	51,096	61,165	50,363	37,317	36,113	37,727	50,469	57,181	49,519	52,127

* 20대: 18세~29세

4) 표본 할당

- 표본 할당은 2026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시도별·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체 목표 표본 1,000명이 모집단 구성비에 부합하도록 비례배분함

〈표 1-4〉 표본 할당(목표 표본크기)

행정구역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국	1,000	75	79	87	99	86	68	71	75	81	97	90	92
서울특별시	187	15	17	15	16	14	12	17	17	15	17	16	16
부산광역시	64	4	5	5	6	6	5	4	4	5	6	7	7
대구광역시	47	3	3	4	5	4	3	3	3	4	5	5	5
인천광역시	61	5	5	6	6	5	4	4	5	5	6	5	5
광주광역시	26	2	2	2	3	2	2	2	2	2	3	2	2
대전광역시	27	3	2	2	3	2	2	2	2	2	3	2	2
울산광역시	21	2	2	2	2	2	1	1	1	2	2	2	2
세종특별자치시	8	1	1	1	1	0	0	1	1	1	1	0	0
경기도	265	21	23	25	27	22	15	19	21	24	26	22	20
강원도	31	2	2	2	3	3	3	2	2	2	3	3	4
충청북도	30	2	2	3	3	3	2	2	2	2	3	3	3
충청남도	42	3	3	4	4	4	3	3	3	3	4	4	4
전라북도	32	2	2	3	3	3	3	2	2	2	3	3	4
전라남도	36	2	2	3	4	4	3	2	2	2	3	4	5
경상북도	50	3	3	4	5	5	4	3	3	4	5	5	6
경상남도	61	4	4	5	7	6	5	3	4	5	6	6	6
제주도	12	1	1	1	1	1	1	1	1	1	1	1	1

* 20대: 18세~29세

3. 실사 설계 및 자료처리

1) 실사 설계

〈표 1-5〉 실사 설계

구 분	내 용
설문 항목	설문항목 검토 및 신규항목 추가 등 수정·보완
표본 설계	모집단 특성 분석 후, 표본설계에 따른 표본 수 확정
조사 준비	- WEB 기반의 조사표 개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구현 - 조사원 교육자료 작성 및 인쇄
조사원 선발/교육	- 동일 조사 경험 또는 유사 조사 경험이 있는 전화조사원 우선 선발 - 조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화조사원 교육 - 거절 상황별 응대 시나리오 교육
실사 관리	1:1 전화면접조사 실시 - 조사 지침서의 원칙에 따른 조사 - 담당 연구원 및 실사관리자가 응답데이터를 점검 - 조사 진행률 확인 및 응답 품질 관리
검증	- 완성된 조사 결과 중 30%를 무작위 추출하여, 본 연구소의 검증원이 감청 실시 - 감청 결과,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지를 전부 무효화하고 재조사 실시

2)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에디팅(Editing), 코딩(Cod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25.0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 가중치 보정

- 표본 할당은 '2026년 5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데이터에 의거하여, 만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시도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방식을 취함. 다만 표본의 무작위 추출 및 실사 과정에서 응답 집단별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집단의 구성비와 표본의 구성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본 조사는 전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의 구성비와 표본의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사후층화 보정가중치를 산출하여 모수추정을 실시함
- 모수추정(가중) 후에는 전체 응답 수가 실제 완료 사례 수(1,000명)와 동일하도록 표준화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함. 즉, 모수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기준'으로 환산된 가중 사례수를 총합이 1,000명이 되도록 다시 조정한 것임. 이에 따라 성·연령·시도별 등 세부 층에서 제시되는 사례 수는 원자료의 실제 사례 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더라도 실제 계산값은 소수점을 포함할 수 있음. 본 보고서 9쪽의 '응답자 특성'은 위 보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가중 후' 표본 크기를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사례 수는 가중 후 사례수임을 밝힘

〈그림 1-2〉 표준화 가중치 산출식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7(제주))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성), 2(여성))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8~29세), 2(30대), ..., 6(70세 이상))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수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표본(조사된) 응답자수

N : 모집단 전체 인구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수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의 가중치

층별 최종 표준화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4. 조사 항목

-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설문이 되도록 문항을 설계함

〈표 1-6〉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반려동물 양육 현황	• 동물 양육 여부
현행 법/제도 인지	•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 •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 동물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
동물과 물건의 구별 인식	•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규정 필요성 •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 •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압류 인식	• 반려동물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 허용: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 반대: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반대: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손해배상 인식	•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범위 • 치료비가 동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범위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시·도) • 직업, 학력

5. 응답자 특성

〈표 1-7〉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4)	49.4
	여성	(506)	50.6
연령별	18~29세	(146)	14.6
	30대	(154)	15.4
	40대	(168)	16.8
	50대	(196)	19.6
	60대	(176)	17.6
	70대 이상	(160)	16.0
지역별	서울	(187)	18.7
	인천·경기	(326)	32.6
	대전·세종·충청	(107)	10.7
	광주·전라	(94)	9.4
	대구·경북	(97)	9.7
	부산·울산·경남	(146)	14.6
	강원·제주	(43)	4.3
직업별	자영업	(179)	17.9
	기능노무/서비스	(134)	13.4
	사무/관리	(303)	30.3
	전업주부	(180)	18.0
	학생	(65)	6.5
	무직/은퇴/기타	(140)	14.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34.3
	대재 이상	(639)	63.9
	모름/응답거절	(18)	1.8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31.7
	기르지 않는다	(683)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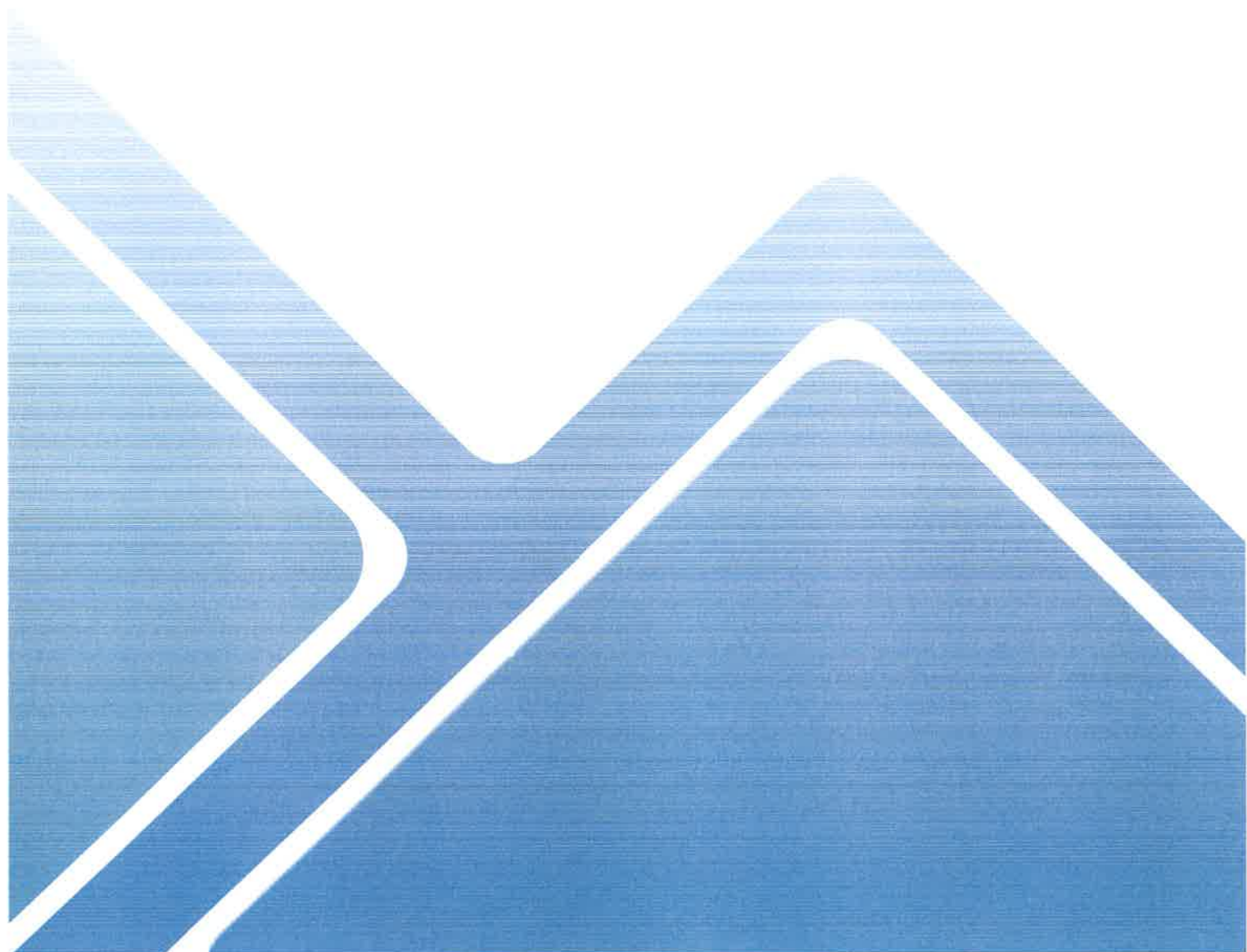
6.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는 조사 용역기관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로, 보고서에 제시된 분석, 해석 및 제언은 조사 용역기관의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 정책 결정 또는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음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소수점 1자리 수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보기 항목별 합계의 숫자가 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음(예. 100.1%, 99.9% 등)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조사된 데이터에 모집단의 인구 비율 분포를 가중치로 반영했기 때문에, 문항의 보기 항목별 응답 비율을 사람 수로 환산하는 경우 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예. 331.1명)
-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문항 내용의 차이, 조사 기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를 할 때는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함

제2장

조사 결과 분석

민법상 물건의 범위,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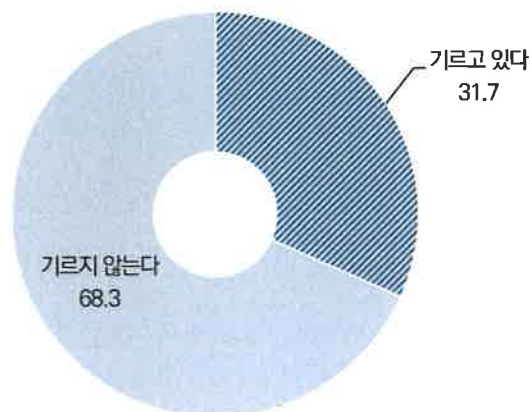
1. 동물 양육 여부

- 전체 응답자의 31.7%가 현재 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르지 않는다는 응답은 68.3%로 나타나, 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응답자가 양육하는 응답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양육 비율이 35.9%로 남성(27.5%)보다 8.4%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34.9%), 40대(36.6%), 50대(35.2%), 60대(34.5%)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수준을 보인 반면, 18~29세(27.3%)와 70대 이상(20.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양육 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됨. 권역별로는 강원·제주(44.9%)에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25.4%)에서 가장 낮아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났으나, 강원·제주 권역의 사례수가 적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직업별로는 자영업(44.1%)에서 양육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무직·은퇴·기타(21.4%)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동물 양육 여부

문) 현재 귀하께서는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단위 : %)



〈표 2-1〉 동물 양육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르고 있다	기르지 않는다	계
전체		(1,000)	31.7	68.3	100.0
성별	남성	(494)	27.5	72.5	100.0
	여성	(506)	35.9	64.1	100.0
연령별	18~29세	(146)	27.3	72.7	100.0
	30대	(154)	34.9	65.1	100.0
	40대	(168)	36.6	63.4	100.0
	50대	(196)	35.2	64.8	100.0
	60대	(176)	34.5	65.5	100.0
	70대 이상	(160)	20.4	79.6	100.0
권역별	서울	(187)	31.0	69.0	100.0
	인천·경기	(326)	32.7	67.3	100.0
	대전·세종·충청	(107)	32.6	67.4	100.0
	광주·전라	(94)	31.9	68.1	100.0
	대구·경북	(97)	32.3	67.7	100.0
	부산·울산·경남	(146)	25.4	74.6	100.0
	강원·제주	(43)	44.9	55.1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44.1	55.9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28.8	71.2	100.0
	사무/관리	(303)	30.0	70.0	100.0
	전업주부	(180)	33.8	66.2	100.0
	학생	(65)	28.6	71.4	100.0
	무직/은퇴/기타	(140)	21.4	78.6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34.7	65.3	100.0
	대재 이상	(639)	30.2	69.8	100.0
	모름/응답거절	(18)	29.1	7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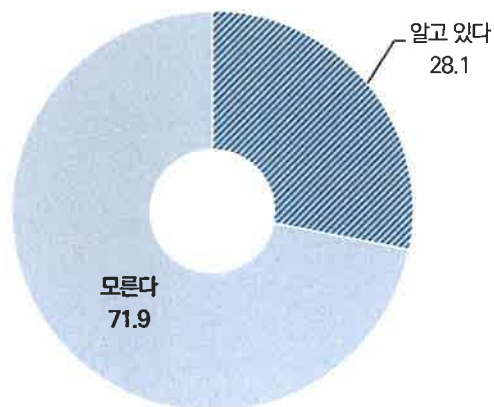
2.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

-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8.1%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71.9%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가 현행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1.0%)이 여성(25.3%)보다 인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39.6%)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18~29세(22.0%)와 70대 이상(18.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과 고령층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권역별로는 강원·제주(38.0%)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해당 권역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권역은 25~32%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직업별로는 자영업(35.7%)과 사무·관리직(31.2%)에서,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30.5%)이 고졸 이하(24.3%)보다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33.0%)가 기르지 않는 응답자(25.9%)보다 인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2-2〉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

문)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이나 전기, 그리고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에 이런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위 : %)



〈표 2-2〉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전체		(1,000)	28.1	71.9	100.0
성별	남성	(494)	31.0	69.0	100.0
	여성	(506)	25.3	74.7	100.0
연령별	18~29세	(146)	22.0	78.0	100.0
	30대	(154)	29.6	70.4	100.0
	40대	(168)	29.8	70.2	100.0
	50대	(196)	39.6	60.4	100.0
	60대	(176)	26.7	73.3	100.0
	70대 이상	(160)	18.2	81.8	100.0
권역별	서울	(187)	32.0	68.0	100.0
	인천·경기	(326)	25.0	75.0	100.0
	대전·세종·충청	(107)	30.3	69.7	100.0
	광주·전라	(94)	28.9	71.1	100.0
	대구·경북	(97)	27.7	72.3	100.0
	부산·울산·경남	(146)	25.4	74.6	100.0
직업별	강원·제주	(43)	38.0	62.0	100.0
	자영업	(179)	35.7	64.3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21.9	78.1	100.0
	사무/관리	(303)	31.2	68.8	100.0
	전업주부	(180)	22.4	77.6	100.0
	학생	(65)	28.6	71.4	100.0
학력별	무직/은퇴/기타	(140)	24.9	75.1	100.0
	고졸 이하	(343)	24.3	75.7	100.0
	대재 이상	(639)	30.5	69.5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모름/응답거절	(18)	17.6	82.4	100.0
	기르고 있다	(317)	33.0	67.0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25.9	7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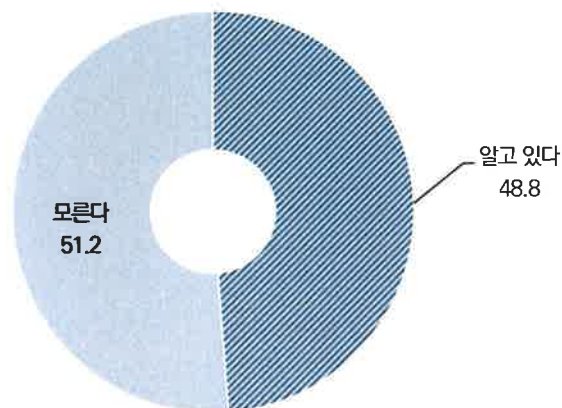
3.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8.8%, 모른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나, 인지 여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양분됨. 앞서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28.1%)와 비교하면, 추상적인 법적 정의보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남성 50.5%, 여성 47.2%), 연령별로는 30대(61.1%)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70대 이상(32.3%)에서 가장 낮아, 고령층의 인지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56.5%)에서,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2.6%)이 고졸 이하(42.2%)보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서울 및 대전·세종·충청(각 55.3%)에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60.3%)가 기르지 않는 응답자(43.5%)보다 16.8%p 높게 나타나, 양육 경험이 인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동물의 물건 취급 사실에 대한 인지율이 83.8%에 달한 반면, 정의를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35.1%에 그쳐, 두 사안에 대한 인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문)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도 이러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위 : %)



〈표 2-3〉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전체		(1,000)	48.8	51.2	100.0
성별	남성	(494)	50.5	49.5	100.0
	여성	(506)	47.2	52.8	100.0
연령별	18~29세	(146)	50.3	49.7	100.0
	30대	(154)	61.1	38.9	100.0
	40대	(168)	51.7	48.3	100.0
	50대	(196)	49.0	51.0	100.0
	60대	(176)	49.0	51.0	100.0
	70대 이상	(160)	32.3	67.7	100.0
권역별	서울	(187)	55.3	44.7	100.0
	인천·경기	(326)	48.1	51.9	100.0
	대전·세종·충청	(107)	55.3	44.7	100.0
	광주·전라	(94)	45.6	54.4	100.0
	대구·경북	(97)	41.3	58.7	100.0
	부산·울산·경남	(146)	42.9	57.1	100.0
	강원·제주	(43)	53.7	46.3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51.2	48.8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38.9	61.1	100.0
	사무/관리	(303)	56.5	43.5	100.0
	전업주부	(180)	45.3	54.7	100.0
	학생	(65)	53.4	46.6	100.0
	무직/은퇴/기타	(140)	41.1	58.9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42.2	57.8	100.0
	대재 이상	(639)	52.6	47.4	100.0
	모름/응답거절	(18)	41.7	58.3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60.3	39.7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43.5	56.5	100.0
민법상 '물건' 정의 인지	알고 있다	(281)	83.8	16.2	100.0
	모른다	(719)	35.1	64.9	100.0

4.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로 나타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2.2%에 그쳐, 동물을 일반 물건과 다르게 규정하는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95.3%가 구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남성(80.1%)보다 15.2%p 높았음. 연령별로는 18~29세(80.1%)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70대 이상(9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구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지지가 나타남. 직업별로는 전업주부(95.2%)에서 가장 높고 학생(78.3%)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93.2%)가 기르지 않는 응답자(85.2%)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력 및 권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한편 구별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앞의 문항들에서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민법상 물건의 정의나 동물의 물건 취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모두 87~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또한 동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 집단에서도 83.8%가 구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소유권 인정과 별개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표 2-4〉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구별해야 한다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계
전체		(1,000)	87.8	12.2	100.0
성별	남성	(494)	80.1	19.9	100.0
	여성	(506)	95.3	4.7	100.0
연령별	18~29세	(146)	80.1	19.9	100.0
	30대	(154)	86.6	13.4	100.0
	40대	(168)	90.6	9.4	100.0
	50대	(196)	86.9	13.1	100.0
	60대	(176)	88.9	11.1	100.0
	70대 이상	(160)	92.8	7.2	100.0
권역별	서울	(187)	87.1	12.9	100.0
	인천·경기	(326)	88.1	11.9	100.0
	대전·세종·충청	(107)	88.3	11.7	100.0
	광주·전라	(94)	85.9	14.1	100.0
	대구·경북	(97)	86.5	13.5	100.0
	부산·울산·경남	(146)	89.7	10.3	100.0
	강원·제주	(43)	87.7	12.3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87.0	13.0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88.8	11.2	100.0
	사무/관리	(303)	87.0	13.0	100.0
	전업주부	(180)	95.2	4.8	100.0
	학생	(65)	78.3	21.7	100.0
	무직/은퇴/기타	(140)	84.3	15.7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89.1	10.9	100.0
	대재 이상	(639)	87.3	12.7	100.0
	모름/응답거절	(18)	80.2	19.8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93.2	6.8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85.2	14.8	100.0
민법상 ‘물건’ 정의 인식	알고 있다	(281)	87.0	13.0	100.0
	모른다	(719)	88.1	11.9	100.0
동물의 물건 취급 인식	알고 있다	(488)	87.1	12.9	100.0
	모른다	(512)	88.4	11.6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557)	83.8	16.2	100.0
	아니다	(443)	92.8	7.2	100.0

4-1.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

- 앞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878명을 대상으로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를 물은 결과, '반려동물까지'가 40.4%,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까지'가 38.5%로 비등하게 나타난 반면, '반려동물과 가축까지'는 21.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반려동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가축까지의 범위에 대한 지지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은 '반려동물까지'(46.5%)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모든 동물까지'(43.5%)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남성은 구별 범위를 반려동물 중심으로, 여성은 모든 동물로 넓게 보는 경향이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반려동물까지'(46.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8~29세에서는 세 응답이 33% 대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임.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서비스직(47.9%)과 자영업(44.8%)에서 '반려동물까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업주부에서는 '모든 동물까지'(44.1%) 응답이 높게 나타남. 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한편 인지 수준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응답자는 '반려동물까지'(42.3%)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한 반면, 이를 모르던 응답자는 '모든 동물까지'(42.3%)를 더 많이 선택함.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알고 있던 응답자 역시 '모든 동물까지'(32.7%) 응답이 모르던 응답자(40.7%)보다 낮게 나타나, 현행 법/제도를 인지하고 있던 집단일수록 구별 범위를 다소 좁게 보는 경향이 확인됨

〈그림 2-5〉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

문)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물건과 동물을 다르게 구별해서 규정해야 한다면, 다르게 구별해야 할 동물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표 2-5〉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반려동물까지	반려동물과 가축까지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까지	계
전체		(878)	40.4	21.1	38.5	100.0
성별	남성	(396)	46.5	21.0	32.5	100.0
	여성	(482)	35.3	21.2	43.5	100.0
연령별	18~29세	(117)	33.6	33.1	33.4	100.0
	30대	(133)	38.3	24.5	37.2	100.0
	40대	(152)	46.1	15.5	38.5	100.0
	50대	(170)	41.8	19.7	38.5	100.0
	60대	(157)	43.2	15.5	41.3	100.0
	70대 이상	(148)	37.2	22.0	40.8	100.0
권역별	서울	(163)	47.6	18.8	33.6	100.0
	인천·경기	(287)	40.0	22.0	38.0	100.0
	대전·세종·충청	(94)	39.7	18.4	41.9	100.0
	광주·전라	(81)	38.5	19.5	41.9	100.0
	대구·경북	(84)	34.1	25.2	40.7	100.0
	부산·울산·경남	(131)	37.1	23.8	39.1	100.0
	강원·제주	(38)	43.5	15.6	40.8	100.0
직업별	자영업	(156)	44.8	17.5	37.7	100.0
	기능노무/서비스	(119)	47.9	18.9	33.2	100.0
	사무/관리	(263)	42.4	20.7	36.9	100.0
	전업주부	(171)	34.5	21.4	44.1	100.0
	학생	(51)	26.1	32.6	41.3	100.0
	무직/은퇴/기타	(118)	37.3	23.7	38.9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06)	40.2	18.2	41.6	100.0
	대제 이상	(557)	40.6	23.3	36.1	100.0
	모름/응답거절	(15)	35.1	0.0	64.9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296)	40.6	22.3	37.2	100.0
	기르지 않는다	(582)	40.3	20.5	39.2	100.0
민법상 '물건' 정의 인지	알고 있다	(245)	40.3	27.0	32.7	100.0
	모른다	(633)	40.4	18.9	40.7	100.0
동물의 물건 취급 인지	알고 있다	(425)	42.3	23.2	34.4	100.0
	모른다	(453)	38.6	19.1	42.3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467)	41.3	24.9	33.8	100.0
	아니다	(411)	39.3	16.8	4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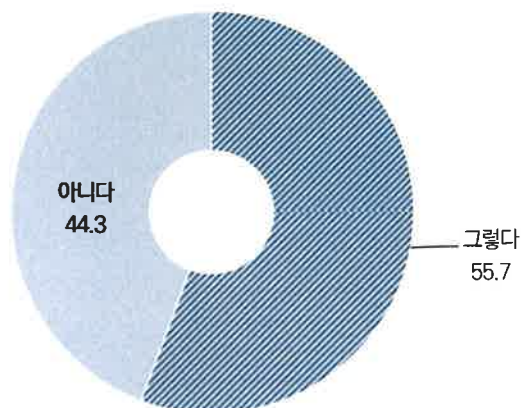
5.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인식

-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5.7%, 아니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남. 과반이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4.3%로 적지 않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65.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6.2%에 그쳐, 여성의 경우 과반(53.8%)이 자유로운 사용·처분에 동의하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 18~29세(45.4%)에서 가장 낮고 70대 이상(71.5%)에서 가장 높았음.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70.2%)와 자영업(65.2%)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기능노무·서비스직(46.5%)과 사무·관리직(48.5%)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음
- 한편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45.8%로, 기르지 않는 응답자(60.3%)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53.2%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구별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유자의 처분 권한 자체는 인정하는 견해가 과반을 차지함.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73.8%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6〉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인식

문) 귀하께서는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표 2-6〉 동물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1,000)	55.7	44.3	100.0
성별	남성	(494)	65.5	34.5	100.0
	여성	(506)	46.2	53.8	100.0
연령별	18-29세	(146)	45.4	54.6	100.0
	30대	(154)	47.5	52.5	100.0
	40대	(168)	48.2	51.8	100.0
	50대	(196)	57.2	42.8	100.0
	60대	(176)	62.8	37.2	100.0
	70대 이상	(160)	71.5	28.5	100.0
권역별	서울	(187)	58.3	41.7	100.0
	인천·경기	(326)	52.7	47.3	100.0
	대전·세종·충청	(107)	49.0	51.0	100.0
	광주·전라	(94)	61.8	38.2	100.0
	대구·경북	(97)	61.1	38.9	100.0
	부산·울산·경남	(146)	58.9	41.1	100.0
	강원·제주	(43)	47.8	52.2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65.2	34.8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46.5	53.5	100.0
	사무/관리	(303)	48.5	51.5	100.0
	전업주부	(180)	55.8	44.2	100.0
	학생	(65)	50.9	49.1	100.0
	무직/은퇴/기타	(140)	70.2	29.8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58.7	41.3	100.0
	대재 이상	(639)	54.5	45.5	100.0
	모름/응답거절	(18)	42.1	57.9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45.8	54.2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60.3	39.7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878)	53.2	46.8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122)	73.8	2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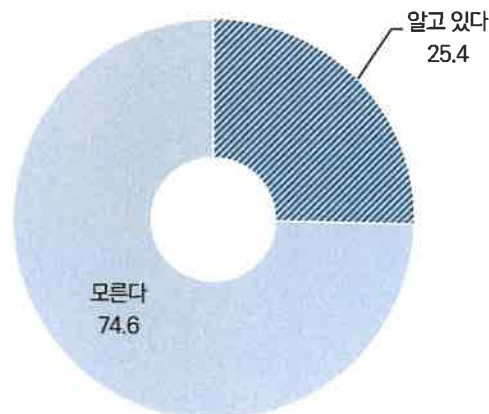
6. 동물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이 소유한 동물도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5.4%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이 74.6%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동물의 압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앞서 살펴본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대한 인지(28.1%)나 동물의 물건 취급 사실에 대한 인지(48.8%)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동물 압류와 관련된 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28.1%)이 여성(22.9%)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30.8%)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직업별로는 학생(37.3%)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기능노무·서비스직(15.3%)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27.2%)이 고졸 이하(22.2%)보다 다소 높았음.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28.2%)가 기르지 않는 응답자(24.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강원·제주(4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해당 권역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2-7〉 동물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

문)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민사집행법상 그 사람이 소유한 동물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위 : %)



〈표 2-7〉 동물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전체		(1,000)	25.4	74.6	100.0
성별	남성	(494)	28.1	71.9	100.0
	여성	(506)	22.9	77.1	100.0
연령별	18~29세	(146)	27.7	72.3	100.0
	30대	(154)	30.8	69.2	100.0
	40대	(168)	26.6	73.4	100.0
	50대	(196)	22.1	77.9	100.0
	60대	(176)	23.7	76.3	100.0
	70대 이상	(160)	22.9	77.1	100.0
권역별	서울	(187)	29.1	70.9	100.0
	인천·경기	(326)	24.1	75.9	100.0
	대전·세종·충청	(107)	29.4	70.6	100.0
	광주·전라	(94)	18.6	81.4	100.0
	대구·경북	(97)	22.6	77.4	100.0
	부산·울산·경남	(146)	20.7	79.3	100.0
	강원·제주	(43)	47.1	52.9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24.7	75.3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15.3	84.7	100.0
	사무/관리	(303)	29.0	71.0	100.0
	전업주부	(180)	22.0	78.0	100.0
	학생	(65)	37.3	62.7	100.0
	무직/은퇴/기타	(140)	27.5	72.5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22.2	77.8	100.0
	대재 이상	(639)	27.2	72.8	100.0
	모름/응답거절	(18)	26.2	73.8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28.2	71.8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24.2	7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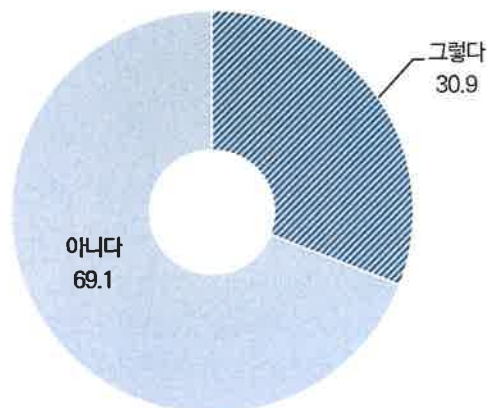
7. 반려동물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 동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0.9%, 아니다는 응답이 69.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할이 반려동물 압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뚜렷하여 남성은 39.9%가 허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2.2%에 그쳐, 여성의 압류 반대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18~29세(42.5%)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0대(21.2%)에서 가장 낮았음. 직업별로는 학생(44.1%)과 무직·은퇴·기타(42.3%)에서 허용 응답이 높았던 반면에 전업주부(23.7%)는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특히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허용 응답이 20.2%에 그쳐 반대가 79.8%에 달한 반면, 기르지 않는 응답자는 허용이 35.9%로, 양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서 압류 허용 응답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 본 문항에 대한 인식은 앞선 응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72.2%가 압류에 부정적인 반면,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집단은 압류에 긍정적 응답이 53.1%로 과반을 차지함. 또한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82.4%에 달해, 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집단(부정적 58.5%)과 큰 차이를 보였음. 한편 동물의 압류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압류에 긍정적 응답이 46.2%로, 모르고 있던 응답자(긍정적 25.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8〉 반려동물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문) 따라서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표 2-8〉 반려동물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1,000)	30.9	69.1	100.0
성별	남성	(494)	39.9	60.1	100.0
	여성	(506)	22.2	77.8	100.0
연령별	18~29세	(146)	42.5	57.5	100.0
	30대	(154)	36.6	63.4	100.0
	40대	(168)	26.8	73.2	100.0
	50대	(196)	21.2	78.8	100.0
	60대	(176)	28.7	71.3	100.0
	70대 이상	(160)	33.6	66.4	100.0
권역별	서울	(187)	30.2	69.8	100.0
	인천·경기	(326)	29.6	70.4	100.0
	대전·세종·충청	(107)	36.1	63.9	100.0
	광주·전라	(94)	25.9	74.1	100.0
	대구·경북	(97)	40.3	59.7	100.0
	부산·울산·경남	(146)	26.6	73.4	100.0
	강원·제주	(43)	35.7	64.3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27.1	72.9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30.4	69.6	100.0
	사무/관리	(303)	29.7	70.3	100.0
	전업주부	(180)	23.7	76.3	100.0
	학생	(65)	44.1	55.9	100.0
	무직/은퇴/기타	(140)	42.3	57.7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29.9	70.1	100.0
	대재 이상	(639)	31.6	68.4	100.0
	모름/응답거절	(18)	26.8	73.2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20.2	79.8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35.9	64.1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878)	27.8	72.2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122)	53.1	46.9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557)	41.5	58.5	100.0
	아니다	(443)	17.6	82.4	100.0
동물 압류 가능성 인식	알고 있다	(254)	46.2	53.8	100.0
	모른다	(746)	25.7	7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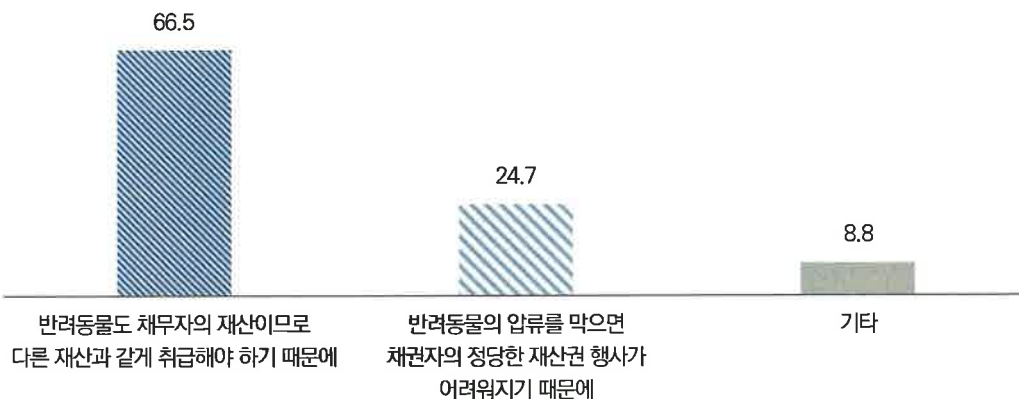
7-1.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한 30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반려동물도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다른 재산과 함께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압류를 막으면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24.7%, '기타'가 8.8%로 나타남. 압류 허용의 근거가 주로 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본 문항은 압류를 허용한다고 응답한 일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 집단의 사례수가 작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성별로는 남성(71.2%)이 여성(58.5%)보다 '재산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30.6%)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함.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두 응답이 각각 43.9%, 42.2%로 비등하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재산이므로 동일 취급'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연령대별 사례수가 크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외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본 집단과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인정한 집단에서도 '재산이므로 동일 취급'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각 64.0%, 68.5%)

〈그림 2-9〉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문) 반려동물의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9〉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반려동물도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다른 재산과 함께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압류를 막으면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309)	66.5	24.7	8.8	100.0
성별	남성	(197)	71.2	21.3	7.6	100.0
	여성	(112)	58.5	30.6	10.9	100.0
연령별	18~29세	(62)	43.9	42.2	13.8	100.0
	30대	(56)	73.9	16.9	9.2	100.0
	40대	(45)	65.3	28.7	6.1	100.0
	50대	(42)	74.2	21.2	4.6	100.0
	60대	(50)	78.2	14.7	7.1	100.0
	70대 이상	(54)	69.2	21.2	9.6	100.0
권역별	서울	(57)	63.5	19.8	16.6	100.0
	인천·경기	(97)	62.8	28.3	8.9	100.0
	대전·세종·충청	(39)	63.7	31.1	5.2	100.0
	광주·전라	(24)	68.1	26.4	5.5	100.0
	대구·경북	(39)	67.2	26.1	6.7	100.0
	부산·울산·경남	(39)	68.2	23.6	8.2	100.0
	강원·제주	(15)	100.0	0.0	0.0	100.0
직업별	자영업	(48)	68.3	19.9	11.8	100.0
	기능노무/서비스	(41)	76.2	15.2	8.6	100.0
	사무/관리	(90)	67.7	26.9	5.4	100.0
	전업주부	(43)	66.0	23.1	10.9	100.0
	학생	(29)	40.7	55.8	3.5	100.0
	무직/은퇴/기타	(59)	69.6	17.9	12.6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102)	70.7	20.7	8.6	100.0
	대재 이상	(202)	64.5	26.4	9.1	100.0
	모름/응답거절	(5)	66.0	34.0	0.0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64)	57.1	30.0	12.9	100.0
	기르지 않는다	(245)	69.0	23.3	7.7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244)	64.0	27.6	8.4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65)	76.0	13.7	10.3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232)	68.5	22.4	9.1	100.0
	아니다	(78)	60.9	31.3	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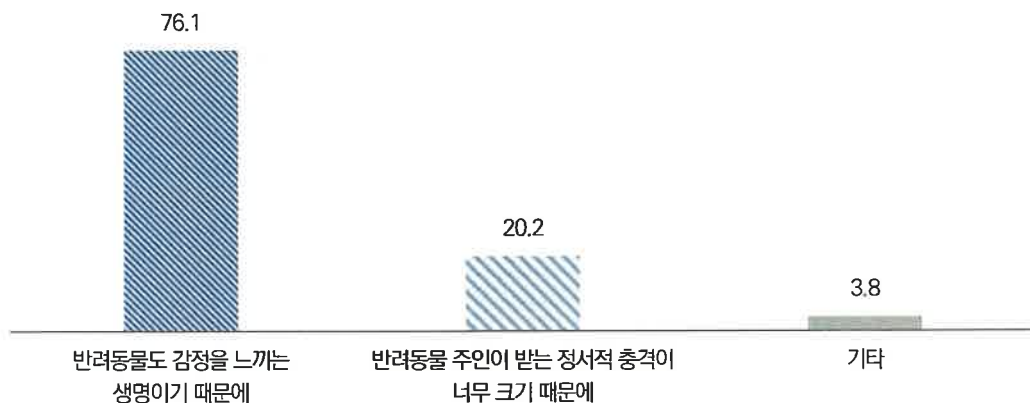
7-2.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반려동물 압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69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반려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주인이 받는 정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 20.2%, '기타'가 3.8%로 나타남. 압류 반대의 근거가 주로 동물을 감정을 지닌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84.1%)에서 '감정을 느끼는 생명'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60대(28.7%)와 70대 이상(31.2%)에서는 '주인의 정서적 충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학생(84.8%)에서 '감정을 느끼는 생명' 응답이 타 직업 대비 높았음
- 한편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감정을 느끼는 생명' 응답이 84.7%에 달해, 처분 권한을 인정한 집단(66.3%, '정서적 충격' 30.4%)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본 집단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 응답이 77.3%로 다수를 차지함

〈그림 2-10〉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문) 반려동물의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10〉 반려동물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반려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주인이 받는 정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691)	76.1	20.2	3.8	100.0
성별	남성	(297)	73.6	22.1	4.4	100.0
	여성	(394)	77.9	18.8	3.3	100.0
연령별	18~29세	(84)	84.1	13.5	2.4	100.0
	30대	(98)	79.4	17.2	3.4	100.0
	40대	(123)	78.4	15.5	6.1	100.0
	50대	(154)	80.3	15.1	4.6	100.0
	60대	(126)	67.9	28.7	3.5	100.0
	70대 이상	(106)	67.3	31.2	1.5	100.0
권역별	서울	(130)	77.6	20.3	2.1	100.0
	인천·경기	(229)	74.9	21.3	3.7	100.0
	대전·세종·충청	(68)	75.9	20.4	3.7	100.0
	광주·전라	(70)	78.5	21.5	0.0	100.0
	대구·경북	(58)	79.9	13.0	7.1	100.0
	부산·울산·경남	(107)	75.9	19.8	4.3	100.0
	강원·제주	(28)	65.2	22.9	11.9	100.0
직업별	자영업	(131)	80.4	14.9	4.7	100.0
	기능노무/서비스	(93)	80.7	17.0	2.3	100.0
	사무/관리	(213)	75.8	20.1	4.2	100.0
	전업주부	(137)	72.1	22.8	5.0	100.0
	학생	(36)	84.8	12.4	2.8	100.0
	무직/은퇴/기타	(81)	67.1	31.9	1.1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241)	73.0	23.5	3.5	100.0
	대재 이상	(437)	77.1	18.8	4.0	100.0
	모름/응답거절	(13)	95.0	5.0	0.0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253)	79.6	15.1	5.3	100.0
	기르지 않는다	(438)	74.0	23.1	2.8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633)	77.3	19.3	3.3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57)	61.7	29.7	8.6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326)	66.3	30.4	3.2	100.0
	아니다	(365)	84.7	11.0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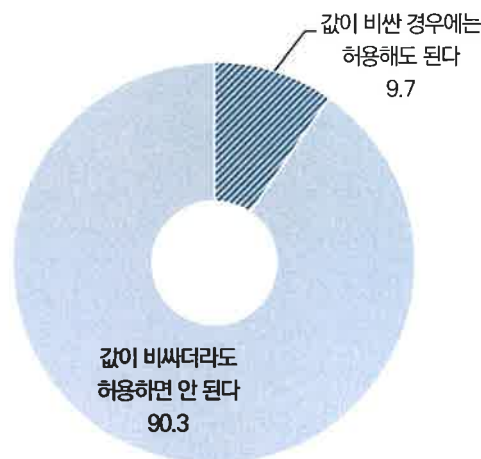
7-3.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 앞서 반려동물 압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691명을 대상으로, 값이 비싸 빛을 갚는 데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압류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값이 비싸더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90.3%로 압도적이었으며 '값이 비싼 경우에는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은 9.7%에 그침. 반려동물 압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물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압류에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집단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반대가 우세하였음. 다만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93.6%)가 기르지 않는 응답자(88.3%)보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92.8%)이 고졸 이하(85.5%)보다 허용 반대 응답이 다소 높았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이 16.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 역시 83.6%가 반대하여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압도적이었음
- 한편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89.8%가 고가 반려동물이라도 압류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였고,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95.4%가 압류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람들 중에서는 허용 반대 비율이 93.1%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은 허용 반대 비율이 87.1%로 나타남

〈그림 2-11〉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문) 그렇다면 값이 비싸서 빛 갚는 데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일 경우,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표 2-11〉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 허용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값이 비싼 경우에는 허용해도 된다	값이 비싸더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	계
전체		(691)	9.7	90.3	100.0
성별	남성	(297)	11.2	88.8	100.0
	여성	(394)	8.6	91.4	100.0
연령별	18~29세	(84)	8.7	91.3	100.0
	30대	(98)	9.9	90.1	100.0
	40대	(123)	5.7	94.3	100.0
	50대	(154)	7.2	92.8	100.0
	60대	(126)	11.8	88.2	100.0
	70대 이상	(106)	16.4	83.6	100.0
권역별	서울	(130)	9.9	90.1	100.0
	인천·경기	(229)	9.3	90.7	100.0
	대전·세종·충청	(68)	14.8	85.2	100.0
	광주·전라	(70)	6.4	93.6	100.0
	대구·경북	(58)	19.9	80.1	100.0
	부산·울산·경남	(107)	4.9	95.1	100.0
	강원·제주	(28)	5.8	94.2	100.0
직업별	자영업	(131)	10.6	89.4	100.0
	기능노무/서비스	(93)	7.9	92.1	100.0
	사무/관리	(213)	7.4	92.6	100.0
	전업주부	(137)	10.0	90.0	100.0
	학생	(36)	13.8	86.2	100.0
	무직/은퇴/기타	(81)	14.4	85.6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241)	14.5	85.5	100.0
	대재 이상	(437)	7.2	92.8	100.0
	모름/응답거절	(13)	6.3	93.7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253)	6.4	93.6	100.0
	기르지 않는다	(438)	11.7	88.3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633)	10.2	89.8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57)	4.6	95.4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326)	12.9	87.1	100.0
	아니다	(365)	6.9	93.1	100.0

8.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인식

-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주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범위를 묻은 결과,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가 34.2%,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11.7%, '기타'가 1.7%로 나타남. '배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7%에 그쳐, 응답자의 86.6%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중에서도 배상 범위를 모든 동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6.2%)이 남성(48.5%)보다 '모든 동물 배상' 응답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14.0%)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별로는 30대(60.3%)에서 '모든 동물 배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58.4%)에서 '모든 동물 배상' 응답이 높았으며,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든 동물 배상'이 57.1%,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7.4%로 나타나, 기르지 않는 응답자(각 50.2%, 13.7%)에 비해 배상 필요성과 배상 범위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됨
- 이외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0.0%에 그친 반면,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23.6%로 두 배 이상 높았음. 또한 반려동물 압류에 반대한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배상'(37.9%)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압류를 허용한 사람들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16.1%)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즉 평소 동물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2-12〉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인식

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해자가 동물 값 같은 재산 피해 외에 주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면 어느 동물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 ▤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기타



〈표 2-12〉 동물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기타	계
전체		(1,000)	11.7	34.2	52.4	1.7	100.0
성별	남성	(494)	14.0	35.7	48.5	1.8	100.0
	여성	(506)	9.4	32.8	56.2	1.6	100.0
연령별	18~29세	(146)	8.3	33.2	57.7	0.8	100.0
	30대	(154)	10.8	28.9	60.3	0.0	100.0
	40대	(168)	12.6	39.8	45.8	1.9	100.0
	50대	(196)	11.7	32.0	55.4	0.9	100.0
	60대	(176)	12.8	40.2	45.0	1.9	100.0
	70대 이상	(160)	13.2	30.6	51.4	4.8	100.0
권역별	서울	(187)	7.4	40.6	49.6	2.4	100.0
	인천·경기	(326)	12.9	34.9	50.9	1.4	100.0
	대전·세종·충청	(107)	11.4	34.9	52.7	0.9	100.0
	광주·전라	(94)	11.8	32.6	53.7	1.9	100.0
	대구·경북	(97)	14.7	26.7	57.4	1.2	100.0
	부산·울산·경남	(146)	13.2	31.3	53.8	1.7	100.0
	강원·제주	(43)	9.6	30.3	56.4	3.7	100.0
직업별	자영업	(179)	12.6	35.5	51.3	0.6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14.1	29.8	53.8	2.3	100.0
	사무/관리	(303)	12.1	36.8	49.7	1.5	100.0
	전업주부	(180)	9.6	33.5	54.5	2.4	100.0
	학생	(65)	10.8	42.8	46.4	0.0	100.0
	무직/은퇴/기타	(140)	10.2	28.4	58.4	3.0	100.0
학력별	고졸 이하	(343)	10.8	32.4	54.6	2.2	100.0
	대재 이상	(639)	12.2	35.6	50.7	1.5	100.0
	모름/응답거절	(18)	9.4	19.6	70.9	0.0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기르고 있다	(317)	7.4	34.4	57.1	1.1	100.0
	기르지 않는다	(683)	13.7	34.1	50.2	2.0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878)	10.0	35.2	53.2	1.6	100.0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122)	23.6	27.6	46.5	2.3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그렇다	(557)	13.9	33.6	50.4	2.1	100.0
	아니다	(443)	8.8	35.0	55.0	1.2	100.0
반려동물 압류 허용 여부	그렇다	(309)	16.1	26.1	56.5	1.3	100.0
	아니다	(691)	9.7	37.9	50.5	1.9	100.0

9. 치료비가 동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범위 인식

- 치료비가 동물의 값(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43.2%,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도 배상하되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하면 된다'가 40.6%로 비등하게 나타났으며,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하면 된다'는 14.0%, '기타'가 2.2%로 나타남.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한도 내 배상과 전액 배상)이 83.8%에 달해, 동물 피해를 동물의 가격만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였음. 다만 전액 배상과 한도 내 배상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49.8%)이 남성(36.4%)보다 '전액 배상' 응답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17.6%)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별로는 18~29세(49.8%) 등 청년층에서 '전액 배상' 응답이 높았던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26.5%)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배상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확인됨.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학생(각 48.6%)에서 '전액 배상' 응답이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에서 '한도 내 배상'과 '전액 배상'을 합한 응답이 고졸 이하보다 높아,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 배상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음. 특히 동물 양육 여부별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액 배상'이 56.7%, '값까지만 배상'이 7.5%로 나타나, 기르지 않는 응답자(각 36.9%, 17.1%)에 비해 배상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뚜렷하였음
- 한편 앞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모든 동물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전액 배상'이 50.6%였던 반면, 배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값까지만 배상'이 38.0%로 높아, 두 배상 문항에서 일관된 태도가 확인됨. 또한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전액 배상 52.7%)과 반려동물 압류에 반대한 사람들(전액 배상 48.0%)에게서도 전액 배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평소 동물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동물의 가격을 넘는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2-13〉 치료비가 동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범위 인식

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비가 그 동물의 값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치료비를 어디까지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단위 : %)

-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하면 되고, 그것을 넘는 치료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도 배상하되,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 ▤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
- 기타



〈표 2-13〉 치료비가 동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 범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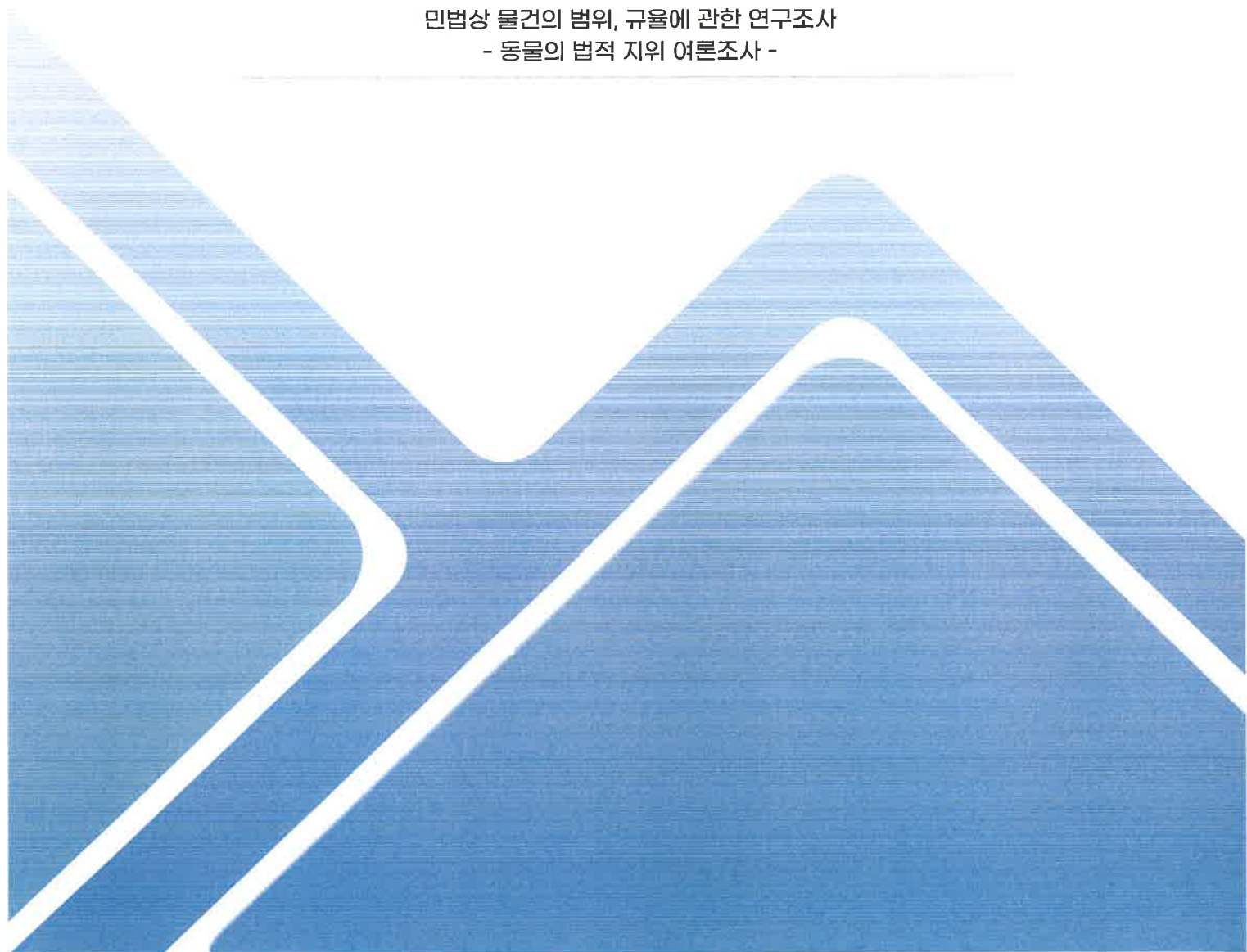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하면 되고, 그것을 넘는 치료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도 배상하되,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치료를 꼭 필요한 치료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	기타	계
전체		(1,000)	14.0	40.6	43.2	2.2	100.0
성별	남성	(494)	17.6	43.6	36.4	2.3	100.0
	여성	(506)	10.5	37.6	49.8	2.1	100.0
연령별	18~29세	(146)	6.8	43.4	49.8	0.0	100.0
	30대	(154)	5.4	53.9	40.0	0.7	100.0
	40대	(168)	12.5	42.4	42.4	2.8	100.0
	50대	(196)	12.4	35.9	48.5	3.2	100.0
	60대	(176)	19.6	36.3	42.1	2.0	100.0
	70대 이상	(160)	26.5	33.8	35.6	4.1	100.0
지역별	서울	(187)	10.7	47.1	38.7	3.5	100.0
	인천·경기	(326)	12.3	39.2	47.2	1.4	100.0
	대전·세종·충청	(107)	19.5	34.5	43.2	2.8	100.0
	광주·전라	(94)	19.9	37.0	40.5	2.6	100.0
	대구·경북	(97)	12.0	38.9	46.9	2.2	100.0
	부산·울산·경남	(146)	14.4	44.3	39.5	1.8	100.0
직업별	강원·제주	(43)	18.8	37.4	41.9	1.9	100.0
	자영업	(179)	17.3	40.9	40.1	1.7	100.0
	기능노무/서비스	(134)	12.5	41.9	42.7	2.9	100.0
	사무/관리	(303)	9.7	45.7	43.4	1.3	100.0
	전업주부	(180)	16.5	31.8	48.6	3.1	100.0
	학생	(65)	5.7	45.7	48.6	0.0	100.0
학력별	무직/은퇴/기타	(140)	21.4	36.8	37.7	4.2	100.0
	고졸 이하	(343)	20.2	31.3	45.0	3.5	100.0
	대재 이상	(639)	10.3	45.9	42.5	1.2	100.0
동물 양육 여부별	모름/응답거절	(18)	27.0	28.8	31.0	13.2	100.0
	기르고 있다	(317)	7.5	32.9	56.7	2.9	100.0
일반 물건과의 구별 규정 필요성	기르지 않는다	(683)	17.1	44.1	36.9	1.9	100.0
	구별해야 한다	(878)	12.2	41.8	43.6	2.3	100.0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 인식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122)	27.0	31.6	39.8	1.6	100.0
	그렇다	(557)	19.4	42.6	35.6	2.4	100.0
반려동물 압류 허용 여부	아니다	(443)	7.3	38.0	52.7	2.0	100.0
	그렇다	(309)	22.0	43.2	32.5	2.3	100.0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 범위	아니다	(691)	10.5	39.4	48.0	2.2	100.0
	그렇다	(309)	22.0	43.2	32.5	2.3	100.0
	배상하지 않아도 됨	(117)	38.0	38.1	20.2	3.8	100.0
	반려동물만 배상	(342)	11.6	48.1	39.4	0.9	100.0
배상 범위	모든 동물 배상	(524)	10.0	36.8	50.6	2.7	100.0
	기타	(17)	22.3	23.9	49.2	4.7	100.0

제3장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민법상 물건의 범위,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



제 3 장.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1)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임

-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응답자는 48.8%,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인지한 응답자는 28.1%, 동물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응답자는 25.4%에 그침
- 특히 동물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낮아, 동물 관련 현행 법/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동물과 일반 물건의 구별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 이러한 지지는 현행 법/제도들의 인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나타나, 현행 법/제도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87~88% 정도의 높은 응답을 보임
- 또한 동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557명) 사이에서도 83.8%가 구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소유권 인정과는 별개로 동물을 특별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음

3) 구별의 적용 범위 및 구체적 권리 제한에 대한 신중한 태도

-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까지’(40.4%)와 ‘모든 동물까지’(38.5%)로 의견이 양분되었으며, 중간 범위인 ‘가축까지’(21.1%)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반려동물 압류에 대해서는 반대가 69.1%로 우세하였으며, 값이 비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압류 반대 입장을 유지한 응답이 90.3%에 달해, 동물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한 원칙적 반대 경향이 확인됨
- 압류 반대의 근거로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아,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음

4) 손해배상 범위 확대에 대한 우호적 인식

- 동물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 86.6%(반려만 34.2% + 모든 동물 52.4%)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모든 동물까지 배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함
- 치료비가 동물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3.8%(한도 내 추가 배상 40.6% + 전액 배상 43.2%)가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동물 피해를 동물의 가격만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함
- 두 배상 문항에서 일관된 태도가 확인되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적극적이던 응답자가 치료비 배상에서도 전액 배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5) 동물 양육 경험·성별·연령이 주요 변별 요인

- 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구별 필요성, 압류 반대, 배상 범위 확대 등 거의 대부분의 태도 문항에서 동물의 특수성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이 구별 필요성·압류 반대·배상 확대에 더 적극적이었던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일관된 단일 방향보다는 문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고령층은 대체로 제도 인지 수준이 낮고 압류·배상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냄

[주요 결과 요약]

구분	주요 결과
제도 인지	물건 정의 인지 28.1% / 동물 물건 취급 인지 48.8% / 동물 압류 가능성 인지 25.4%
구별 필요성	구별해야 한다 87.8% /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12.2%
구별 범위	반려동물까지 40.4% / 가축까지 21.1% / 모든 동물까지 38.5%
반려동물 압류	허용 30.9% / 반대 69.1%
정신적 손해 배상	배상 불필요 11.7% / 반려만 34.2% / 모든 동물 52.4% (기타 1.7%)
치료비 초과분 배상	동물 값까지만 14.0% / 한도 내 추가 배상 40.6% / 전액 배상 43.2% (기타 2.2%)

2. 조사 결과 시사점

1) 법/제도와 국민 인식 간 정보 격차

-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인지는 낮은 반면(동물의 물건 취급 사실 48.8%, 압류 가능성 25.4%)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은 87.8%에 달해, 제도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함
- 특히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인식이 제도에 대한 지식보다 동물을 대하는 보편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관련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는 현행 법/제도의 내용과 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구별 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여 규율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지지가 응답자의 현행 법/제도 인지 수준이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인식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기반이 견고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방향에 대한 지지가 곧바로 특정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입법 설계는 국민 인식의 세부 양상을 면밀히 반영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 '반려동물까지'(40.4%)와 '모든 동물까지'(38.5%)로 의견이 뚜렷하게 양분된 점은, 구별 규정의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수렴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 이는 모든 동물에 대한 일률적·전면적 확대나 특정 동물에 한정된 접근 중 어느 하나로 국민 인식이 명확히 수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반려동물 중심 접근과 모든 동물로의 확대 접근이 모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구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제도 수용성, 동물 유형별 특성,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구체적 권리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

- 반려동물 압류에 대한 반대가 69.1%에 달하고, 압류 반대 응답자 중 값이 비싼 경우에도 압류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90.3%로 나타난 점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려는 인식이 추상적 가치 판단에 그치지 않고 압류와 같은 구체적 쟁점에서도 확인됨
- 특히 이러한 반대가 동물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국민이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압류 제한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 기존 법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동물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존 법체계 간의 조화를 면밀히 검토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5) 손해배상 제도 개선의 여론적 기반

-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 86.6%가, 치료비가 동물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3.8%가 배상 범위 확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동물 피해를 동물의 가격만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두 배상 문항에서 일관된 태도가 나타난 점은 이러한 인식이 단편적 반응이 아니라 동물 피해 배상에 대한 안정적인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함
- 이는 손해배상 제도 개선 논의가 충분한 여론적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배상 범위·한도 등 구체적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전액 배상과 한도 내 배상으로 의견이 나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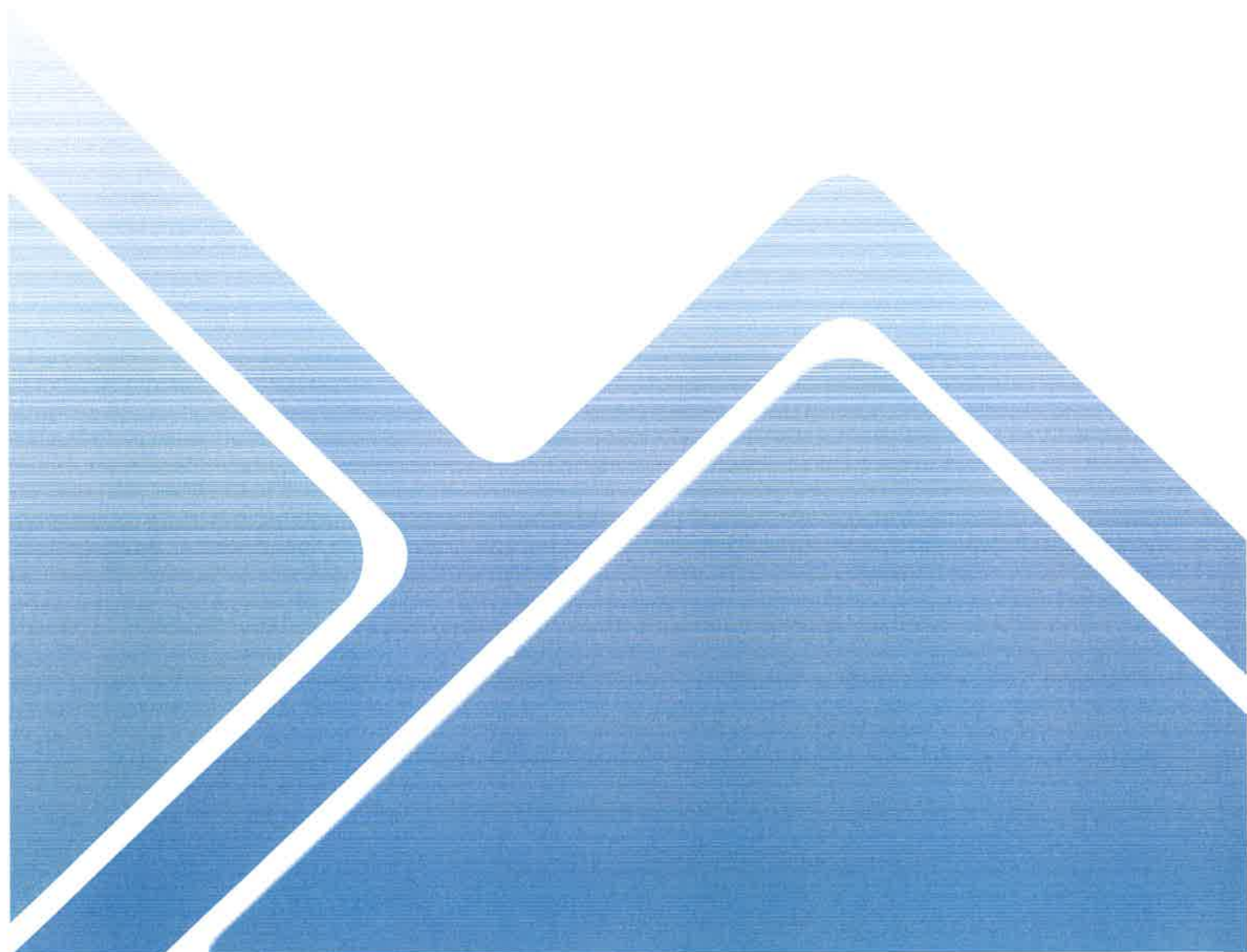
3. 종합

- 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은 현행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동물의 물건 취급 사실 인지 48.8%, 압류 가능성 인지 25.4%),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87.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지가 현행 법/제도 인지 수준이나 소유권 인식에 따라 큰 차이 없이 확인된 점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만 보기보다는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함께 관찰됨.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는 반려동물 중심과 모든 동물로의 확대 의견이 양분되었고, 반려동물 압류에 대해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반대가 우세하였음. 반면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 쟁점의 성격에 따라 국민 인식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남. 즉 국민은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게 규율하자는 큰 방향에는 폭넓게 동의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와 구체적 권리·의무의 조정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결과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방향성 측면에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국민 인식의 층위와 쟁점별 차이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동물 양육 경험과 성별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제도 변화의 영향과 수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본 조사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입법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제도로 구체화해 나가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질문지

민법상 물건의 범위,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입니다. 법무부 의뢰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표전화는 02-3702-2100번입니다.

SQ0) ○○님께서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

SQ1) 성 별(입지 말고 목소리로 판단) :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A.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문]

문1) 현재 귀하께서는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 기르고 있다
- 기르지 않는다

문2)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이나 전기, 그리고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에 이런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알고 있다
- 모른다

문3)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도 이러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알고 있다
- 모른다

문4)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별해야 한다
-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 **문5)로 이동**

문4-1) (문4에 1. 응답자만)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물건과 동물을 다르게 구별해서 규정해야 한다면, 다르게 구별해야 할 동물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려동물까지
- 반려동물과 가축까지
-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까지

문5) 귀하께서는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B. 반려동물 압류에 관한 설문]

문6)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민사집행법상 그 사람이 소유한 동물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알고 있다
- 모른다

문7) 따라서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문7-2, 문7-3으로 이동**

문7-1) (문7에 1. 응답자만) 반려동물의 압류를 허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반려동물도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다른 재산과 같게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 반려동물의 압류를 막으면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 기타(적을 것 : _____)

문7-2) (문7에 2. 응답자만) 반려동물의 압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반려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에
- 반려동물 주인이 받는 정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 기타(적을 것 : _____)

문7-3) (문7에 2. 응답자만) 그렇다면 값이 비싸서 빚 갚는 데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일 경우, 압류를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값이 비싼 경우에는 허용해도 된다
- 값이 비싸더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

[C. 손해배상에 관한 설문]

- 문8) 누군가의 잘못으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해자가 동물 값 같은 재산 피해 외에 주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면 어느 동물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3.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4. 기타(적을 것 :)

- 문9) 누군가의 잘못으로 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비가 그 동물의 값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치료비를 어디까지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필요시 예시 안내〉

예를 들어 동물의 값은 50만 원인데 치료비가 100만 원 나온 경우, 50만 원을 넘는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1.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하면 되고, 그것을 넘는 치료비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도 배상하되,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3.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
4. 기타(적을 것 :)

D. 인구통계학적 질문

-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자영업
2. 기능노무/서비스(판매/서비스, 기능/숙련공, 일반작업)
3. 사무/관리(사무/기술, 경영/관리, 전문/자유)
4. 가정주부
5. 학생
6. 무직/은퇴
7. 기타(적을 것 :)

-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학교 졸업(무학, 중퇴 포함)
2. 중학교 졸업(재학, 중퇴 포함)
3. 고등학교 졸업(재학, 중퇴 포함)
4. 전문대 졸업(재학, 중퇴 포함)
5. 대학 졸업(재학, 중퇴 포함)
6. 대학원 수료/졸업(재학 중퇴 포함)
7. 기타(적을 것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